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2 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무동향

-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예규판례

○ 법원

- 비상장주식의 1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따른 예외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기획재정부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분할법인 주식과의 차액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행정안전부

-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물류센터 운영)가 운영·사용 시,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지특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1차 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2024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4 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 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 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

주요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의 2)

〈개정안〉 7 개 분야 54 개 시설 ⇒ 7 개 분야 58 개 시설

- (신규) 4 개

분야	세부기술
이차전지(1 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디스플레이(2 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1 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확대) 1 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1 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개정안〉 14 개 분야 182 개 시설 ⇒ 14 개 분야 183 개 시설

- (신규) 1 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1 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 (확대) 1 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1 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 6, 별표 6 의 2)

〈개정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시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구체화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조특칙 §7)

〈개정안〉

-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에 투입하는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R&D 공제율 적용
-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7)

〈개정안〉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 의 8)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추가

〈개정이유〉 경제안보품목 생산기반 강화 지원

■ 법인세법

○ 공동경비 부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개정안〉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부담 기준 추가

- 공동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

○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⑧)

〈개정안〉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승계 가능 주식등의 범위 확대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 2)

〈개정안〉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5년 ⇒ 3년)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소득세법

○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소득칙 §83 의 5)

〈개정안〉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 확대(2년 ⇒ 5년)

〈개정이유〉 빈집 문제 해소 지원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부가칙 §47)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7 의 2)

〈개정안〉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확대

-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제외)
- 해약환급금준비금(「법인세법」 제 32 조 제 1 항)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비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합리화

■ 종합부동산세법

○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종부칙 §4)

〈개정안〉 합산배제 기간 한시 연장(5년 ⇒ '25.1.1. ~ '26.12.31.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국조칙 §2)

〈개정안〉 제출대상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 추가(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 의 3)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관세법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 의 3)

〈개정안〉 이자율 하향(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 개의 세법개정안이 '25.2.27.(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및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2.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보도자료\(Link\)](#)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 대기업, 중견기업: 15% ⇒ 20%
- 중소기업: 25% ⇒ 30%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 '24·'25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조특법 §24)

〈개정안〉 '24·'25 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업 규모별 공제율 차등)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조특법 §10)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개정이유〉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 **법인세법**

○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법률 제 19193 호 법인법 부칙 §16)

〈개정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26.12.31.까지 연장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 의 5①)

〈개정안〉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추가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국기법 §85 의 7, §85 의 8 신설)

〈개정안〉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 일)을 부여
-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 일당 1 일 평균수입금액의 1 천분의 3 이내,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 일당 5 백만원 이내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세무동향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2024 년 12 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경우 2025 년 3 월 31 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월 1 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2.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신고개요

- 2024 년 12 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신고대상

-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 신고방법

-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가능
- 특히, ①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음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예규판례

[법원] 비상장주식의 1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따른 예외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1.9. 선고 2021 두 53320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 57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 조의 3 제 1 항 제 6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 조 제 1 항 제 1 호의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안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 2. 8. 사망하였음. 서울지방법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① 원고 1 등 총 11명 명의의 예금 및 증권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예금’), ② 소외 2 등 7인 명의의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 발행주식 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③ 소외 4 명의의 광주시 ◇◇면 토지 및 소외 5 와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성남시 분당구 빌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43,859,458,761 원으로 파악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예금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 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고 1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 2017. 8. 1.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를 부과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 제 1 호 가액(이하 ‘제 1 호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단서, 제 2 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 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와 1 주당 순자산가치를 2 와 3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에서는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 1 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3 년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 1 호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 1 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 2 호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 57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에서는 각 호에서 제 1 호 가액인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 6 호) 등을 들고 있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 호는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

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호 가액을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 2 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 2 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 2 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 1 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임.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 두 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 두 312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소외 3 회사는 2004. 2. 3.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토지(이하 '☆☆동 부동산')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6 년 4 월 무렵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동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 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큼. 그리고 ☆☆☆동 부동산 등 소외 3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 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제 6 호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함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제 1 호 가액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 1 호 가액을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 1 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함

그런데도 원심은 ☆☆☆동 부동산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 1 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중 2603, 2024.11.14., 결정)

■ 쟁점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사안

청구법인은 해외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OEM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해 2014 년경 미국에 자회사인 A(이하 “쟁점 미국자회사”), 2016 년경 호주에 자회사인 B(이하 “쟁점 호주자회사”)라 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와 합하여 “쟁점 해외자회사들”이라 함)를 각 설립하였음.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이 각 100% 출자한 법인들로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또는 해외로 판매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18년 내지 2022년 동안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그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용 등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음(이하 위 대여금 중 청구법인이 2018 년에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쟁점 대여금”이라 함)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쟁점 대여금의 자력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8 년 내지 2022 년에 각 쟁점 해외자회사들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주당 미화 1 달러)으로 총 000 원 상당을 출자전환하였음(이하 위 출자전환 중 2018 년에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해 이루어진 출자전환을 “쟁점 출자전환”이라 함)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① 쟁점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의 시가와와의 차이만큼 청구법인이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3 호 본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000 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쟁점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 쟁점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000 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위 ②에 관하여 분당세무서에 통보하였음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게 000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이하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주위적으로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호 후단의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 52 조, 동법 시행령 제 88 조 제 3 호 후단(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같은 조 제 9 호(그 밖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는 의견임

이 건에서 쟁점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발행이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미국자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발행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의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이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 52 조 제 1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

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6.7.26. 선고 95 누 751 판결, 같은 뜻임)

이에 쟁점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 미국자회사에 쟁점 대여금을 빌려주게 된 후 쟁점 출자전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해외 진출과정에서 해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제조·판매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 자회사인 쟁점 미국자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협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 미국자회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쟁점 대여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업무협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 대여금의 사용처 역시 쟁점 미국자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제3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같이 쟁점 미국자회사의 존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더불어 쟁점 미국자회사가 설립된 2014년경 직후부터 청구법인은 쟁점 미국자회사의 제3채권자들(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해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쟁점 미국자회사가 손실 누적에 따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자 청구법인에게는 쟁점 출자전환과 같은 쟁점 미국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제3채권자들이 자신의 대여금을 조기회수하거나 청구법인이 위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않아 쟁점 미국자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쟁점 미국자회사로부터 기존 채권인 쟁점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3채권자들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까지 함께 이행하여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쟁점 출자전환이 국조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후단, 「법인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 △△지방국세청장의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처분청은 예비적으로 쟁점 출자전환 행위가 「법인세법」 제24조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 미국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도 위법함

[조세심판원]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 서 3112, 2024.12.30., 기각)

■ 쟁점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 차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3.17. 2016~2021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9. 일부인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음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 차 유권해석”)을 근거로 2018 사업연도 및 2020~2021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해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2024.3.5. 청구법인에게 2018 사업연도 및 2020~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 두 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 100 조의 32 제 8 항 및 제 10 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의 4 제 10 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 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 분의 150, 100 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광 0015, 2025.1.8., 취소)

■ 쟁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전력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자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쟁점자회사와 함께 “발전자회사”라 함)의 지분 각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이고, 외국법인인 C의 완전자회사임

청구법인은 2021.6.21. 쟁점자회사에게 만기(2036.6.30.) 일시상환 조건으로 000 원(이자율은 연 4.6%로, 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고, 2021·2022 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28 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7.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2021·2022 사업연도 연결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2023.9.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이 규정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 두 19037 판결 등 참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음(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 헌바 7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중 별도로 자신의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바, 비록 해당 법령에 명확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은 지분법평가이익과 자회사에 대한 업무대행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발전자회사 주식(그 비중이 90% 이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설비의 운영 여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손익과 자산가치에 직결되는 점, 쟁점대여금의 만기를 2036.6.30.로 비교적 장기로 한 것은 쟁점자회사가 PF 대주단과 체결한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 3 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의 발생 당시(2021.6.21.) 쟁점자회사의 자금수지 현황

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에는 000 원, 2021년 7월에는 000 원의 유동자금 부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어 쟁점발전소의 발전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PF 대출금 대환 등과 같이 그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 부 5199, 2025.2.4.,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대여금)을 지연 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전기·전자제품 부품(세탁기, 건조기,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100%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 000(이하 ‘멕시코 자회사’)와 000(이하 ‘베트남 자회사’)라 하고, 이를 멕시코 자회사와 함께 “해외자회사들”이라 함) 등을 두고 있음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 매출채권(이하 “채권 등”) 이 통상적인 회수기일(90 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이하 지연회수된 채권 등 함께 000 원을 “쟁점금액”이라 함)되고 있으므로 결산시 미계상된 멕시코 자회사의 인정이자와 베트남 자회사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3.20.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제외한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잘못된 세무조정이라는 이유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채권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은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조심 2016중 2322, 2017.1.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A(주)의 협력회사로 A(주)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A(주)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A(주)와 동반 해외진출한 것으로 기술지원 계약서를 보면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등을 활용하여 A(주)의 해외현지법인에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기술료, 기계장치대금 등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는 점,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이 확인되고, 해외자회사들의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술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해외자회사들의 자금난 심화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멕시코 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오랜기간 발생하여 법인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이 쉽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 서 9161, 2025.2.11., 기각)

■ 쟁점

- ① (주위적)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예비적)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는 '임금증가금액'이 계산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해외자회사들의 채권(미수금, 외상매출금, 대여금)을 지연 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등산전문브랜드로 등산화, 등산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기자본 000 원을 초과하는 영리법인으로, 2017 사업연도는 각 소득 중 「법인세법」 제 52 조 제 2 항에 따라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100 분의 10 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2018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00 조의 32 제 2 항에 따라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100 분의 20 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근로자 중 ① 전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② 당기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각 임금지급 월수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바, 전기의 임금지급 월수를 조정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잘못 납부하였다 하여 2023.1.30. 처분청에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직전 사업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이하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인정하여 환급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이하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사업연도 사이의 월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구에 대해서는 2023.3.31. 경정을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기업의 고용증대나 임금총액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급여환산만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 부 6882, 2024.12.27.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9 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에는 퇴직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같은 뜻임)인 점, 청구주장과 같이 상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거나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외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입사한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및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 부 6882, 2024.12.27.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분할법인 주식과의 차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12.24.)

■ 질의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 안) 손금산입 불가
- (2 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1 안)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물류센터 운영)가 운영·사용 시,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지특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1, 2025.1.10.)

■ 질의

수탁자(관리형 토지신탁)가 산업단지 내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위탁자가 입주(물류센터 운영)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직접 사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4 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5 항에서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감면 규정과 추징 규정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16, 2022.12.13. 해석 참조)

한편, '22 년 1 월 1 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 적용시 소유자의 범위에 「신탁법」 제 2 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개정되었는 바('21.12.28. 법률 제 18656 호로 개정), 해당 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소유자)인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임('22 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적용요령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 두 11372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취득자(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

[국세청]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217, 2024.8.29.)

■ 질의

- (질의 1) 질의법인이 투자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개방형 금형 중 단발 및 연발 금형으로, 여러 공정의 금형을 동시에 제작하고, 통상 5-10 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 (질의 2) 질의법인이 제작하여 국내외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 생산 공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프레스 공정을 위하여 금형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질의법인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형도 제작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질의법인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청업체는 질의법인 소유의 금형을 활용하여 질의법인을 위한 부품만 제조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부품의 형태, 사이즈 등이 자동차 모델별로 전부 달라, 다른 제조업자를 위한 부품을 질의법인의 금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1 차 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2296, 2025.1.24.)

■ 질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2017 ~ 2021 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상시근로자 수	58 명	60 명	64 명	65 명	63 명
증가인원 수		+2 명	+4 명	+1 명	-2 명

- 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지 못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청]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사전-2025-법규법인-0008, 2025.1.31.)

■ 질의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 년) 이전 사업연도('24 년)에 지출한 금액(계약금)에 대해 '24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3 년 해외업체로부터 테스트용 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
-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고, '24 년 중 지출한 금액은 약 15 억원이며 '25.1.7. 수입승인을 얻은 후 '25 년 중 실제 사용이 이뤄질 예정임

구분	금액	대금 지급여부
계약금(30%)	15 억원	2024.1.15. 기지급
중도금(60%)	30 억원	2025.1. 지급예정
잔금(10%)	5 억원	

- 질의법인에 따르면 위 기계장치는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산임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 제 14 항 제 3 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